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61
----------	-----

2025. 9. 1.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2025. 8. 14. 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9. 1.)
“원안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안전교통국장)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 반영 및 고물가시대에 19~24세 청년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하철까지 지원수단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변경 :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년(안 제2조제1호)

나. 지원수단 추가 : 서울시 내를 운행하는 철도차량(안 제2조제6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감사담당관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25. 7. 18. ~ 8.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민)

가. 조문 내용별 검토

- 안 제2조는 개정 이유와 별개로 입법기술적 차원에서 본 일부개정 조례안 제2조제1호라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으로 개정하는 것은 동조의 제목은 정의조항인데 불구하고 내용은 정의조항과 지원대상의 혼재로 인해 해석이 명확하지 않으며, 가목부터 다목의 사람 중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교통비 지원을 하겠

다고도 해석되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정의규정 작성 방식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약칭(예:어르신 등 이란)을 정의 규정으로 하지 않으며, 약칭의 사용은 일반 주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하며, 특히 “어르신 등” 과 같이 단순히 명사에 “등” 을 덧붙인 표현은 범위를 불명확하게 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저해한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례에 해당함.
- 부득이하게 포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 구체적 대상을 나열한 후 “이하 ○○라 한다” 1)와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정의 규정은 자치법규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인바, 현행보다 모호한 해석을 야기하고 집행에 혼란을 줄 경우 법적 안정성과 행정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제2조라목의 규정은 약칭의 사용에 있어서는 입법기술적 차원에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²⁾
- 또한, 제명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

1) 만약 불가피하게 범위를 포괄하려는 취지가 있다면, “어르신, 아동, 청소년, 청년” 등과 같이 구체적 대상을 나열한 후 ** “이하 ” 어르신등’ 이라 한다” **와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고 현행 제2조제3호 “교통비 지원” 이란 어르신등이...~~~~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제2조 정의에서

00. “교통비 지원” 이란 어르신, 아동·청소년, 청년(이하 “어르신등” 이라 한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바람직한 수정안으로 제5조(지원대상)으로 이동하고,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한다면 아래와 같음.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이란 강남구(이하 “구”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청년” 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②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자치법규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함.

- 약칭은 입법 편의에는 유리하나 구민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약칭은 본문을 확인해야 의미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어르신 등” 표현은 글자 수만 줄였을 뿐 범위를 불명확하게 하여 자치법규 이해를 저해할 소지 있으므로, 조례 제명의 경우 약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조례 제명에서는 약칭 사용을 지양하고 모두 열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의 규정과 더불어 제명도 수정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³⁾, 불가피할 경우 공통 요소를 모아 새로운 용어⁴⁾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나.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청년의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24.8 ~ 25.5)를 반영하여 19~24세 청년⁵⁾들에게 교통비 지원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현행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지 못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됨에 이른 상황은 중앙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잘못된 예측으로 대외적으로 강남구 행정 신뢰성과 구의회의 심의 기능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므로 집행부서는 추후 본 개정조례안과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함.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청소년, 청년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4) 약칭을 하는 경우에도 “A, B, C ~” 를 약칭할 때에는 “A” 로 약칭하는 것을 피하고 “A, B, C ~” 등의 공통요소를 모아 새로운 용어로 약칭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하면 “A등” 으로 약칭하고 이 경우 “등” 은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 용례임.

5)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교통약자(아동·청소년·어르신)의 이동 편의 증진,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의 필요성 인정되나, 청년(19~24세)의 경우 국토교통부(K-패스) 및 서울시(기후동행카드) 등 국가 또는 광역 교통비 지원사업 일부와 연계해 중복 지급이 안되도록 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근거하지 않고 노인복지법령⁶⁾에 따라 현재도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므로 중복처리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6)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농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①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은 **별표 1**과 같다.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

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路面電車)·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도시철도운송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 나.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 다. 삭제 <2014. 5. 21.>
- 6의2. “도시철도부대사업”이란 도시철도시설·도시철도차량·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 나. 도시철도 차량·장비와 도시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 다.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라. 역세권 및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7. “도시철도건설자”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8. “도시철도운영자”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제11호에 따른 민자도시철도운영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9. “도시철도종사자”란 도시철도차량의 운전·운행관리 및 정비 업무, 도시철도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승무 및 역무서비스 업무,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그 밖에 도시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10. “민자도시철도”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
- 11. “민자도시철도운영자”란 민자도시철도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자를 말한다.

□ 노인복지법

-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

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별표 1과 같다.

②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7.12.13>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에 한한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7. 토론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1
----------	-----

제출연월일 : 2025. 8. 1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교통행정과

1.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 반영 및 고물가시대에 19~24세 청년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하철까지 지원수단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변경 :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년(안 제2조제1호)
- 나. 지원수단 추가 : 서울시 내를 운행하는 철도차량(안 제2조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감사담당관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25. 7. 18. ~ 8.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39세”를 “24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각 목의”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시내버스”를 “시내버스, 도시철도”로 한다.

3.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어르신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나.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라. 제1호 각 목의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p> <p>2.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신설></p> <p>3. “교통비 지원”이란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p> <p>4.·5.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나.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다. ----- 24세 -----</p> <p style="padding-left: 20px;">라. ---- <u>가목부터 다목까지</u> <u>에 해당하는</u> ----- -----</p> <p style="text-align: center;">-</p> <p>2. (현행과 같음)</p> <p>3. “<u>도시철도</u>”란 「<u>도시철도법</u>」 제2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u>철도차량</u>을 말한다.</p> <p>4. ----- -- <u>시내버스, 도시철도</u>---</p> <p>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p>

비 용 추 계 서

I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사업 지원대상 변경 및 교통비 지원수단 추가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금 : 분기별 가입인원 × 평균 지급금액
 - 19~24세 청년은 K-패스/기후동행카드를 이용가능한 대상으로 중복지원이 제한되기에 신청률 상한을 50%로 예상하여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세출	서버, 콜센터등운영	947,447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747,447
	교통비 지원금	7,182,037	10,163,157	10,468,052	10,782,093	11,105,556	49,700,895
□ 총 비용		8,129,484	10,613,157	10,918,052	11,232,093	11,555,556	52,448,342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구비	지방세수입	8,129,484	10,613,157	10,918,052	11,232,093	11,555,556	52,448,342
합계		8,129,484	10,613,157	10,918,052	11,232,093	11,555,556	52,448,342

5. 덧붙이는 의견 : 향후 시행연차별 교통수단 이용률 및 인구변동 추이에 따라 비용추계 결과는 변동 가능하며, 이를 고려할 때 사업의 규모 등을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6. 작성자 : 교통행정과 행정7급 윤호준 (☎ 02-3423-6377)

II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연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서버, 콜센터 등 운영		947,447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747,447
교통비 지원금	65세 이상	5,422,212	6,653,008	6,852,598	7,058,176	7,269,921	33,255,916
	19~24세	500,000	1,204,545	1,240,681	1,277,902	1,316,239	5,539,367
	13~18세	1,029,648	1,839,520	1,894,706	1,951,547	2,010,093	8,725,514
	6~12세	230,177	466,084	480,067	494,469	509,303	2,180,099
합계		8,129,484	10,613,157	10,918,052	11,232,093	11,555,556	52,448,342